##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1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박민규·박희승·김한규

이훈기 • 윤후덕 • 김우영

박정현 • 윤준병 • 민병덕

황정아 · 강준현 · 조인철

유동수 · 강유정 · 한민수

진선미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1965년까지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 ②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 상한 연령에 1세를 뺀 연령을 적용한다.
- 제3조(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출생자의 임의계속가입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의 출생자인 사업장가입자로서 64세가 된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

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			
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60세</u> 가 된 때	4. <u>65세</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1.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지		
<u>자였던 자</u> 로서 60세가 된 자.	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가. ~ 다. (생 략)

2. (생략)

②・③ (생 략)

\_\_\_\_\_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